

「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」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2조(정의) (생략)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“요건신청”이란 수출입시 허가·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허가·승인 <u>그밖의</u> 조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4. “<u>인터넷 통관포털</u>”(이하 “<u>통관포털</u>”이라 한다)이란 수출입신고 등 민원업무처리 및 정보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<a href="https://unipass.customs.go.kr">https://unipass.customs.go.kr</a>로 접속하게 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.</p> <p>5. ~ 6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.</p> <p>4. “<u>통관포털</u>”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5. ~ 6.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조문 정비</p>
<p>제7조(확인물품 및 확인사항) ① 「<u>관세법</u>」 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할 때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출입요건은 별표 1과</p>	<p>제7조(확인물품 및 확인사항) ① 「<u>관세법</u>」 <u>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</p>	<p>○ 조문 정비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별표 2와 같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「관세법」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, 자율확인우수기업 등 별표 5의 세관장확인생략 대상법령 및 수출입자가 수출입신고하는 물품. 다만,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8조(확인요청) &lt;신설&gt;</p> <p>① <u>세관장에게 통관시 수출입물품의 요건구비 여부를 확인요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관련법령</u></p>	<p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법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8조(지정요청) ① 관세청장은 매년 11월에 요건확인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 요청할 물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긴급한 경우에는 수요조사 기간이 아닌 때에도 수출입물품의 요건구비 여부를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을 요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</u></p>	<p>○ 조문 정비</p> <p>○ 요건확인기관들이 지정요청을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정기 수요조사 규정 신설</p> <p>○ 기존 제1항을 제2항으로 변경 및 세관장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· 대상물품 · 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 및 요청사유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 <u>&lt;단서 신설&gt;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세관장이 요건구비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망 연계방법, 연계시기 및 「관세법」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실시 계획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요청사유 · 요청내용 · 물품의 특성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, 전산망 연계 및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실시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확인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요건확인</p>	<p><u>호서식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요청서에 관련법령 · 대상물품 · 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 및 요청사유 등을 기재하고 통관규제영향분석서 및 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을 요청하려는 품목의 수가 10개(HSK 10단위를 기준으로 한다) 이하인 경우에는 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 확인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제2항에 -----  -----  -----  <u>법</u> -----  -----.</p> <p>④ 제2항에 -----  -----  ----- <u>법</u> -----  ----- <u>세</u>  <u>관장확인대상의 지정 여부를</u> -----</p>	<p>확인대상 지정요청서식 신설</p> <p>○ 기존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 및 조문 정비</p> <p>○ 기존 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 및 조문 정비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관세청장은 <u>세관장확인 대상</u>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p> <p>④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수출입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내용 및 그 사유를 지체없이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&lt;단서 신설&gt;</p> <p>⑤ 관세청장은 통관단계에서 적발실적, 요건확인기관의 요건확인 운영 및 사후관리 실적, 통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요건확인기관과 협의하여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에서 제외할 수 있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----- . 다만, -----  <u>세관장확인대상</u> -----  -----  ----- .</p> <p>⑤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. <u>다만,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을 추가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.</u></p> <p>⑥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.</p> <p>⑦ <u>관세청장은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가운데 HSK 10단위의 변경이 필요한 품목이나 물품의</u></p>	<p>○ 기존 제4항을 제5항으로 변경 및 세관장확인대상 추가 시 제1항 내지 제3항 준용 단서 신설</p> <p>○ 기존 제5항을 제6항으로 변경</p> <p>○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누락 방지 등을 위해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 data-bbox="107 427 277 469">&lt;신설&gt;</p> <p data-bbox="87 794 707 836">제9조(확인방법) ① ~ ③ (생략)</p> <p data-bbox="107 868 902 1110">④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<u>확인시</u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신고내역과 요건승인내역을 전산으로 상호 대사하여 자동으로 심사하는 전자심사제를 운영할 수 있다.</p> <ol data-bbox="125 1139 902 1385"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생략)</li> <li><u>주무부 장관</u>이나 요건확인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</li> <li>(생략)</li> </ol>	<p data-bbox="947 240 1742 403"><u>통관 시 세관장이 세관장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품목 등의 정보를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.</u></p> <p data-bbox="947 427 1742 770"><u>⑧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품목이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품목을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p data-bbox="929 794 1637 836">제9조(확인방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 data-bbox="947 868 1742 1110">④ ----- <u>확인시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ol data-bbox="965 1139 1742 1385"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현행과 같음)</li> <li><u>주무부장관</u> ----- -----</li> <li>(현행과 같음)</li> </ol>	<p data-bbox="1816 240 2145 339">관계기관에 관련 정보제공 절차 마련</p> <p data-bbox="1776 868 2119 906"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 data-bbox="1776 1209 2119 1248"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4. 동일 세번에 다수 법령 요건이 중복되어 신속통관의 저해가 우려되면서 <u>해당법령이 타 법령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경우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제10조(통관자료의 요청 및 제공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요청사유와 내용 등을 <u>검토한 후</u> 통관자료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<p>제11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<u>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</u>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<u>12월 31일까지</u>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4. ----- ----- <u>해당 법령- 다른 법령</u> 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통관자료의 요청 및 제공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검토한 후</u> ----- -----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</u> ----- ----- ----- <u>6월 30일까지</u> -----</p>	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 및 조문 정비</p> 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재검토기한 재설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 (2022. 01.01. 관세청고시 제2022-04호)</u>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대상물품 중 자동차용 타이어는 2022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 ~ 제4조 &lt;생략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 (2022. 01.01. 관세청고시 제2022-04호)</u></p> <p>제1조(시행일) ----- <u>시행한다. &lt;단서 삭제&gt;</u></p> <p>제2조 ~ 제4조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 (2022. 00. 00. 관세청고시 제2023-00호)</u></p> <p><u>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3년 00월00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<u>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</u></p> <p><u>제3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</u></p>	<p>○ 국가기술표준원 요청으로 자동차용 타이어를 세관장확인 대상에서 제외(청수출입안전검사과-1774호)</p> <p>○ 부칙 신설</p>

현행	개정안	비고												
<p>【별표 1】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가.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1 493 898 694"> <thead> <tr> <th>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</th> <th>구비요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(1)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 (가) 야생생물 (나)~(다) 생략</td> <td>○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출허가증 ○ 생략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구비요건	(1)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 (가) 야생생물 (나)~(다) 생략	○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출허가증 ○ 생략	<p><u>따른다.</u></p> <p>【별표 1】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가.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36 493 1738 694"> <thead> <tr> <th>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</th> <th>구비요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(1)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 (가) &lt;삭제&gt; (나)~(다) 현행과 같음</td> <td>○ &lt;삭제&gt; ○ 현행과 같음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구비요건	(1)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 (가) <삭제> (나)~(다) 현행과 같음	○ <삭제> ○ 현행과 같음	<p>○ 수출 야생생물은 세관장확인대상에서 제외</p>				
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구비요건													
(1)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 (가) 야생생물 (나)~(다) 생략	○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출허가증 ○ 생략													
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구비요건													
(1)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 (가) <삭제> (나)~(다) 현행과 같음	○ <삭제> ○ 현행과 같음													
<p>【별표 2】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가.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1 865 898 1193"> <thead> <tr> <th>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</th> <th>구비요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(1) 「약사법」 해당물품 중 의약품 및 한약재 (가)~(나) 생략</td> <td>○ 생략</td> </tr> <tr> <td>(11) 「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 중 수입금지물질,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관리품목</td> <td>○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장의 수입확인서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구비요건	(1) 「약사법」 해당물품 중 의약품 및 한약재 (가)~(나) 생략	○ 생략	(11) 「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 중 수입금지물질,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관리품목	○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장의 수입확인서	<p>【별표 2】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가.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36 865 1738 1193"> <thead> <tr> <th>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</th> <th>구비요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(1) 「약사법」 해당물품 중 의약품 (첨단바이오의약품 포함) 및 한약재 (가)~(나) 현행과 같음</td> <td>○ 현행과 같음</td> </tr> <tr> <td>(11) 「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 중 수입금지물질,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관리품목</td> <td>○ 한국석유화학협회장의 수입확인서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구비요건	(1) 「약사법」 해당물품 중 의약품 (첨단바이오의약품 포함) 및 한약재 (가)~(나) 현행과 같음	○ 현행과 같음	(11) 「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 중 수입금지물질,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관리품목	○ 한국석유화학협회장의 수입확인서	<p>○ 의약품에 첨단바이오 의약품 포함 명확화</p>
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구비요건													
(1) 「약사법」 해당물품 중 의약품 및 한약재 (가)~(나) 생략	○ 생략													
(11) 「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 중 수입금지물질,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관리품목	○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장의 수입확인서													
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구비요건													
(1) 「약사법」 해당물품 중 의약품 (첨단바이오의약품 포함) 및 한약재 (가)~(나) 현행과 같음	○ 현행과 같음													
(11) 「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 중 수입금지물질,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관리품목	○ 한국석유화학협회장의 수입확인서													



현행	개정안	비고												
<p>【별표 3】 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가. 수입물품</p>	<p>【별표 3】 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가. 수입물품</p>	<p>○ 통관포털을 통한 신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규정</p>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91 427 510 464">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</th> <th data-bbox="517 427 898 464">대상업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91 469 510 592">&lt;신 설&gt;</td> <td data-bbox="517 469 898 592">&lt;신 설&gt;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91 596 510 683">&lt;신 설&gt;</td> <td data-bbox="517 596 898 683">&lt;신 설&gt;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대상업무	<신 설>	<신 설>	<신 설>	<신 설>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936 427 1355 464">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</th> <th data-bbox="1361 427 1738 464">대상업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936 469 1355 592">(28) 「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</td> <td data-bbox="1361 469 1738 592">○ 수입확인 신청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936 596 1355 683">(29) 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 해당물품</td> <td data-bbox="1361 596 1738 683">○ 수입신고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대상업무	(28) 「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	○ 수입확인 신청	(29) 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 해당물품	○ 수입신고	
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대상업무													
<신 설>	<신 설>													
<신 설>	<신 설>													
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대상업무													
(28) 「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	○ 수입확인 신청													
(29) 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 해당물품	○ 수입신고													
<p>나. 수출물품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91 834 510 871">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</th> <th data-bbox="517 834 898 871">대상업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91 876 510 970">&lt;신 설&gt;</td> <td data-bbox="517 876 898 970">&lt;신 설&gt;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대상업무	<신 설>	<신 설>	<p>나. 수출물품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936 834 1355 871">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</th> <th data-bbox="1361 834 1738 871">대상업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936 876 1355 970">(9) 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 해당물품</td> <td data-bbox="1361 876 1738 970">○ 수출신고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대상업무	(9) 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 해당물품	○ 수출신고					
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대상업무													
<신 설>	<신 설>													
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대상업무													
(9) 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 해당물품	○ 수출신고													
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【별지 제2호서식】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요청서</p> <p>※ 첨부서류 서식(작성방법 포함) 1. 신규대조표</p>	<p>○ 요건확인기관에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요청 시 요청 서식과 첨부서류 규정</p> <p>○ 첨부서류 참조 서식 및 작성방법 안내</p>												

현행	개정안	비고
<u>&lt;신설&gt;</u>	2. 통관규제영향 분석서	
<u>&lt;신설&gt;</u>	3. 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 확인서	